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지난 10여 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이며,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임.
-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의 설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민간화장실에 대한 지원 및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전담인력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8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349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발의의원 : 김영희 의원
찬성의원 :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지난 10여 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이며,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임.
-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의 설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민간화장실에 대한 지원 및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전담인력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시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전담인력)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

여 추진하는 시장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